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상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범죄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5조)
-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포함

(안 제6조)

-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 신설

(안 제6조의4)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3월 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1, · 팩 스 : 031)3036-8953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u>&lt;신 설&gt;</u></p> <p>5. (생략)</p> <p>③ (생략)</p> <p>제6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lt;신 설&gt;</u></p> <p>7. (생략)</p> <p><u>&lt;신 설&gt;</u></p>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6조의4(<u>협력체계 구축</u>) 시장은 <u>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